

열공급규정 개정() 신·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의2(요금의 조정)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p> <p>1. 사업자는 요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text{조정율}(\%) = (\text{단위당총괄원가} - \text{종합열판매단가}) / \text{종합열판매단가} \times 100$</p> <p>2.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위당총괄원가(원/Gcal)는 연료비원단위에 요금상한적용원단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각의 원단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p> <p>(1)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 연동주기의 총연료비/요금조정기준일 직전 연동주기의 열판매량</p> <p>(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원단위</p> <p>3. 제2항 제1호의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 + 사업자 공급시설의 연료비</p> <p>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열판매단가(원/Gcal)는 직전 요금변경 신고서 조정율 산정에 반영된 단위당 총괄원가를 적용합니다.</p> <p>5.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은 요금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p> <p>6.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p>	<p>제43조(요금조정의 원칙) ①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43조의2(요금조정) 및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44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②요금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p>

현행	개정안
<p>제42조의3(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p> <p>1. 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요금표 중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사용요금 단가x (1 + 조정율/q)</p> <p>2.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정율은 제42조 2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정율의 산정방법에 의합니다.</p> <p>3. 제1항 규정에 의한 “q”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서의 열매출액 중 사용요금 실적비율을 의미합니다.</p> <p>4. 제1항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제의 연동주기는 6개월로 하며,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p> <p>5.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의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은 요금조정율이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10% 이상일 때는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p> <p>7. 삭제</p> <p>제42조의4(기타의 요금조정)(삭제)</p> <p>1. 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1) 제42조 3 규정 이외에 국제유가, 환율, 전기요금의 조정 등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3)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p>	<p>제43조의2(요금조정)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p> <p>1.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p> <p>2.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p> <p>3.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 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p> <p>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p> <p>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p> <p>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p> <p>1.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p> <p>2.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p> <p>3.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p> <p>⑤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감도는 제45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민감도를 적용합니다.</p> <p>⑥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중간요금 조정)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p> <p>1. 사업자는 제42조 3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열요금을 중간조정합니다.</p> <p>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6월1일과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금의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3. 열요금 중간조정은 제42조 2 제2항 제1호의 연료비원단위를 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로 적용하여 제42조 2, 제42조 3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p> <p>4.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조정은 요금조정이 $\pm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pm 10\%$ 이상일 때는 10%미만으로 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 반영합니다.</p> <p>5. 중간조정기준 연료비원단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열원별 단가에 직전 연동주기의 연료비 원단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실적자료의 수열 또는 사용연료 실적물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p> <p>(1)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단가 = 적용월 실적기준 단위당 평균 수열단가(원/Gcal)</p> <p>(2) 자체시설 LSWR 및 B-C유 단가 = 적용월의 월간 MOPS HSFO 180 CST 고시가격 산술평균단가에 동일기간 산술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연료구매에 따라 산출한 연료단가(원/ℓ)</p> <p>(3) 자체시설 LNG 단가 = 적용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또는 적용월 기준 지역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해당절기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요금(원/kg 또는 원/m³)</p> <p>(4) 자체시설 보일러 등유 단가 = 연료구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계약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료단가(원/ℓ)</p> <p>(5) 기타 연료단가 및 적용월 실적이 없는 단가는 최근 열요금 조정시 단가 적용</p> <p>6. 제5항에 의한 중간조정 연료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월은 6월 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3월, 12월 1일 조정시에는 당해연도 9월로 합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정산)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p> <p>1. 사업자는 연료비연동제 적용시 기간불일치로 발생하는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 요금조정 정산을 실시합니다.</p> <p>2. 전년도 정산분은 당해년도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31일까지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이전 요금조정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적용기간 요금조정시 제42조 2 제2항에 의한 단위당 총괄원가에 정산원단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p> <p>3. 정산원단위는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출합니다.</p> <p>(1) 정산원단위(원/Gcal) = (연간 총비용 - 연간 총수익)/당해년도 예산서기준 예상 열판매량</p> <p>(2) 연간 총비용 = 제42조 2 제2항에 의한 총연료비 연간총액 + (제42조 2 제2항에 의한 열요금 상한 적용원단위 x 연간 열판매량)</p> <p>(3) 연간 총수익 = 연간 열판매수익(정산분 제외)</p>	<p>제44조(요금정산)①사업자는 제43조의2(요금조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1회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p> <p>②사업자는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정산조정률)</p> <p>③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p> <p>1.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p> <p>2.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3조의2(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p> <p>3.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 - (요금상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p> <p>4.연간 기본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요금 합계액. 다만, 냉수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p> <p>5.연간 사용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 합계액</p> <p>6.제4호 또는 제5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p> <p>7.요금상한적용원단위 :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단위</p> <p>8.연간 열판매량 : 제5호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p>

현행	개정안
	<p>④제3항 제3호의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이전 정산금액 회수분을 제외합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p> <p>1.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p> <p>2.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p> <p>3.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p> <p>⑥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p> <p>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p> <p>1.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p> <p>2.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p> <p>3.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3조의2(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p> <p>4.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p> <p>⑦정산조정률은 제45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정산조정률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요금조정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5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2조 2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의 검증 또는 한 국지역난방공사 연료비연동제 준용 (2) 지식경제부장관의 열공급규정 개정 신고 (3) 사용자에게 대한 열요금 변경통보</p> <p>제46조(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1. 사업자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구성합니다.</p>	<p>⑧정산조정률은 $\pm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p> <p>제45조(시장기준요금)①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제43조의2(요금정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률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제46조(요금 조정절차)사업자는 제43조의2(요금조정) 및 제44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3조의2(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사용자에게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p> <p>제46조의2(요금검증)①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p>

현행	개정안
<p>(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이 추천하는 소속직원 1인</p> <p>(2) 진주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p> <p>(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의 원장이 추천한 1인</p> <p>(4) 사업자가 추천한 회계법인에서 추천한 1인</p> <p>(5) 진주지역국립대학의 소속단체장이 추천한 자 중 경영(경제, 회계 등)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1인</p> <p>3.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합니다.</p> <p>4. 위원회는 간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p> <p>5. 사업자는 위원회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p> <p>6.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금 검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14.05.01></p>	<p>③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기관 외에 사업자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p> <p>④제45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본 사업자는 제43조의2(요금조정) 및 제44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45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합니다.</p>